

2021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운용계획안

검 토 보 고 서

I. 제안경위

- 의안번호 제2435호, **2021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 기금 운용 계획안**은 2021년 5월 25일 서울특별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인 교육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음

II. 기금운용계획안 관련 검토

1. 제안이유

- 「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」 및 「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에 따라 ‘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’ 필요 재원을 안정적으로 적립·조성하기 위함
- 교육부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사업시기 초반으로 향후 5년간 보통교부금이 매년 교부예정이나, 공공건축심의, 재정투자심사, 공유재산심의 등 사전절차 이행기간이 많이 소요되어, 당해 연도내 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, 이를 기금으로 조성하여 안정적으로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사업을 추진하고자 함
- 관련 법령에 따라 「2021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운용계획안」에 대해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

2. 주요내용

○ 기금운용계획(안) 규모

(단위 : 백만원)

기 금 명	'20년도 말 조 성 액 (a)	'21년도 기금운용계획		'21년도 말 조 성 액 (d=a+b-c)	용 자 금 마회수채권 (e)	총 규 모 (f=d+e)
		조성계획 (b)	집행계획 (c)			
교육시설환경 개 선 기 금	-	38,459	-	38,459	-	38,459

Ⅲ. 검토의견

- 동 기금운용계획안은 '21년 5월, 관련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교육시설환경 개선기금을 신설·운용하고자 회계연도중 기금운용계획안을 제출한 것임
- 동 기금운용계획안은 관련 법령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정하고 있는 바,
 - 동 기금운용계획안은 행정안전부의 「2021년도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」에 따라 ①기금운용총칙과 ②자금운용계획으로 구분하고,
 - ①기금운용총칙에는 기금의 설치목적, 기금의 조성·운용 등에 관한 총괄적인 사항을 기재하였으며, ②자금운용계획에는 수입계획 및 지출계획 등을 포함하여 제출함에 따라 관련 법령을 준수한 것으로 판단됨

(1) 기금 조성 개요

- 동 기금운용계획안은 '21년도에 384억 5,900만원을 조성하여 사용계획없이 전액 예치금으로 지출계획한 것으로 교육부의 「교육비특별회계 예산 편

성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」에 근거하여 금년도말 조성액을 384억 5,900만원으로 계획하여 제출됨

〈표 3-1〉 기금 조성규모

(단위 : 백만원, %)

' 2 0 년 도 말 조 성 액 ①	' 2 1 년 도 조 성 계 획		' 2 1 년 도 말 조 성 액 ④=①+②-③
	②	사 용 계 획 ③	
-	38,459	-	38,459

(2) 기금 수입계획

- 수입계획의 경우,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(384억 1,100만원)과 예금이자 수입(4,800만원)을 계획한 것으로
 - 제출일 현재 '21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중 교육시설환경 개선 사업에 대한 기금전출금이 미편성된 것으로 확인되는 바,
 - 수입계획에 실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해서 지난 5월 25일 시의회에 제출된 「2021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」 심사시 해당 기금전출을 위한 세출과목에 대한 과목조정이 필요한 사안으로 판단됨

〈표 3-2〉 수입계획

(단위 : 백만원)

수입과목				'21년 수입액 (A)	'20년 수입액 (B)	증 감 (A-B)
장	관	항	목			
합 계				38,459	-	38,459
자체수입				48	-	48
	이자수입			48	-	48
		이자수입		48	-	48
			예금이자수입	48	-	48
내부거래				38,411	-	38,411
	전입금			38,411	-	38,411
		전입금		38,411	-	38,411
			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	38,411	-	38,411

(3) 기금 지출계획

○ **지출계획**의 경우, 예치금 항목으로 384억 5,900만원 전액을 계상한 바,

- 예치금은 기금의 고유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고, 향후 유동적인 지출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가용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지출과목으로
- 교육현장에서 교육시설을 개선하기에 앞서 공공건축심의, 재정투자심사, 공유재산심의를 비롯한 사전절차 이행기간 소요 등의 제 요인을 고려하여 사업비 전액을 예치금으로 지출계획한 것으로 검토됨

〈표 3-3〉 지출계획

(단위 : 백만원)

지 출 계 획						'21년 지출액 (A)	'20년 지출액 (B)	증 감 (A-B)
분야	부문	정책	단위	세부	사업내역			
합 계						38,459	-	38,459
교육						38,459	-	38,459
	교육일반							
		예비비및기타				38,459	-	38,459
			예비비및기타			38,459	-	38,459
				내부유보금		38,459	-	38,459
					예치금	38,459	-	38,459

○ 다만, 「2021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 편성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」에 따르면 지출계획중 '분야·부문'은 「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운영기준」이 정하는 세출예산 사업별 예산구조에 따라 설정하도록 하고 있는 바,

- 동 기금운용계획 지출계획중 정책사업인 **예비비 및 기타**는 분야·부문이 “교육”, “교육일반”으로 되어 있으나 관련 기준에 따라 “예비비”로 적정 편성이 필요하여 우리 위원회의 동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시 수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

〈표 3-4〉 예산구조 수정 필요내역

지출계획 (제출안)						지출계획 (수정의견)					
분야	부문	정책	단위	세부	사업내역	분야	부문	정책	단위	세부	사업내역
[050]교육						[160]예비비					
	[054]교육일반						[161]예비비				
		[01]예비비및기타						[01]예비비및기타			
			[01]예비비및기타						[01]예비비및기타		
				[03]내부유보금						[03]내부유보금	
					예치금						예치금

○ 아울러 서울시교육청은 기금사업의 잠재적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여유재원을 **예치금**으로 지출계획한 것이나, 결과적으로 세부사업인 ‘내부유보금’으로 384억 5,900만원을 편성하는 것인 바,

- 적절한 세부사업이 없어 ‘예비비 및 기타’ 단위사업중 내부유보금으로 부득이하게 지출계획한 것으로 사료되나
- 행정안전부가 기금은 예기치 못한 수요 발생 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신속하게 사업비 부족분 충당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예비비 편성을 금지하고 있어
- 사실상의 예치금을 예비비 등으로 편성한 것은 적정과목으로 수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어 예치금이 적정 예산과목으로 편성되도록 교육부에 사업별 예산구조에 대한 개선을 건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

(4) 기타 검토

- 관련 법령은 자치단체가 매년 수립하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기금을 포함하여 작성하도록 정하고 있으며, 기금의 존속기한 및 통합·폐지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5년 단위의 기금정비계획을 매년 작성하여 이를 ‘중기지방재정계획’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음
 - 동 기금운용계획안의 경우, 중기재정계획 총괄부서가 교육비특별회계와 기금을 포함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안을 작성하고, 지방재정계획심의회 심의를 거친 뒤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할 것이나, 제출일 현재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됨
 -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미반영된 기금운용계획안 제출에 대하여는 우리 위원회가 '20년 5월, 이미 유사 사례를 지적한 바 있음에도 동일한 사례가 개선되지 않고 반복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
- 아울러 동 기금운용계획안은 관련 조례의 입법취지에 따라 회계연도중 기금운용계획안이 제출된 것이나
 - 지출계획(384억 5,900만원) 전액을 잉여재원으로 판단하여 384억 5,900만원 전액을 예치하려는 것으로 고유사업에 대한 구체적 지출이 계획되지 않은 것으로 오해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